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359 발의연월일: 2024. 8. 29.

발 의 자:임광현·황정아·박민규

오기형 • 복기왕 • 박지혜

오세희 • 허성무 • 강준현

이해식 • 박홍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추가경정예산에 의해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국세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세의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일방적으로 삭감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세가 줄어들어 교부세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세가 줄어 교부세를 조절하는 경우 국가는 미리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경정예산에 의한 교부세 조절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부세를 조절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제5조(예산 계상) ①・② (생 | 제5조(예산 계상) ①・② (현행과 | | |
| 략) | 같음) | | |
| <u> <신 설></u> | ③ 제2항에 따라 국세가 줄어 | | |
| | 교부세를 조절하는 경우 국가 | | |
| | 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 | |
| | 협의를 하여야 한다. | | |
| <u>③</u> (생 략) |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 | |